

감 사 보 고 서

- 자산운용 및 관리실태 -

2022.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 현황	3
III. 감사결과	11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5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6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산운용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재정책무성 제고

2. 감사대상 및 범위

- 점검대상 : ◆◆◆◆부, ○○○○부
- 대상기간 : '19년 ~ '21년 자산운용 관리실태 점검

3. 중점점검 및 착안사항

-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한 의사결정의 ‘견제와 균형’ 체계 점검
 -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 및 보고 체계 등의 적정성
 - 자산운용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 내부통제의 실효성
- 자산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처리 절차 등의 적정성 점검
 - 국가재정법 등 법령, 자산운용지침 등 내규 준수 여부
 - 자산운용 관련 규정·지침 등의 현행화 및 주기적 개정 여부
 - 기금 관리 및 자금운용 적정 여부
 - 예산집행 및 수입 발생에 대한 처리의 정합성

4. 감사인원 및 기간

- 감사인원(2명) : ☆☆☆ 상임감사(감사지휘), ※※※ 과장
- 감사기간
 - '22.02.28.(월) ~ 03.11.(금) : 예비조사
 - '22.03.14.(월) ~ 04.01.(금) : 실지감사 / 15일간
 - '22.04.03.(월) ~ 05.13.(금) : 관계부서 및 관련자 서면질의 및 답변 추가
 - '22.05.16.(월) ~ 05.20.(금) :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작성
 - '22.05.27.(금) : 감사결과 보고
 - '22.05.30.(월) : 감사결과 확정 및 처분요구서 발송

5. 감사결과 처리

- 감사결과 최종 확정
 - 지적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 수렴 후 감사실의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22. 05. 23(월) 점검결과 최종 확정

II. 감사대상 현황

1. 문화예술진흥기금 개요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라 1973년 설립된 사업성기금으로 정부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었다.
- 기금의 재원은 문화예술진흥 등을 위한 기관 주요 사업 지원에 사용되며, 기금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다.

2. 자산운용 현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표1]과 같이 2021년 말 현재 총자산 〇〇〇억원의 〇〇%인 〇〇〇억 원을 금융자산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〇〇〇억원(〇〇%)을 단기 자금, 〇〇〇억원(〇〇%)을 중장기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표1] '2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규모 및 증감율 (평가액 기준)

(단위: 억원, %, %p)

구분	운용규모 (연초이후)			전년말 대비				목표비중 (자산배분안)		
	말잔	평잔	평잔 비중	현금 흐름	손익	말잔	평잔	목표 비중	목표 대비	허용 범위
단기	현금성									
	유동성									
	소계									
중장기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대체투자									
	소계									
기금전체										

※ 각 비중은 개별자산의 월별 누적평잔의 전체 평잔 대비 비중(%)을 의미함

- 최근 5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규모는 [표2]와 같이 증가추세에 있고 지속적인 수익실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금지출 확대로 적자 재정에 대비하여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고, [표3]과 같이 수익률 실적이 점차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표2]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규모('17년 ~ '21년)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규모					

[표3] 예술위 기금운용 수익률 실적('17년 ~ '21년)

(단위: %)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목표 수익률					
실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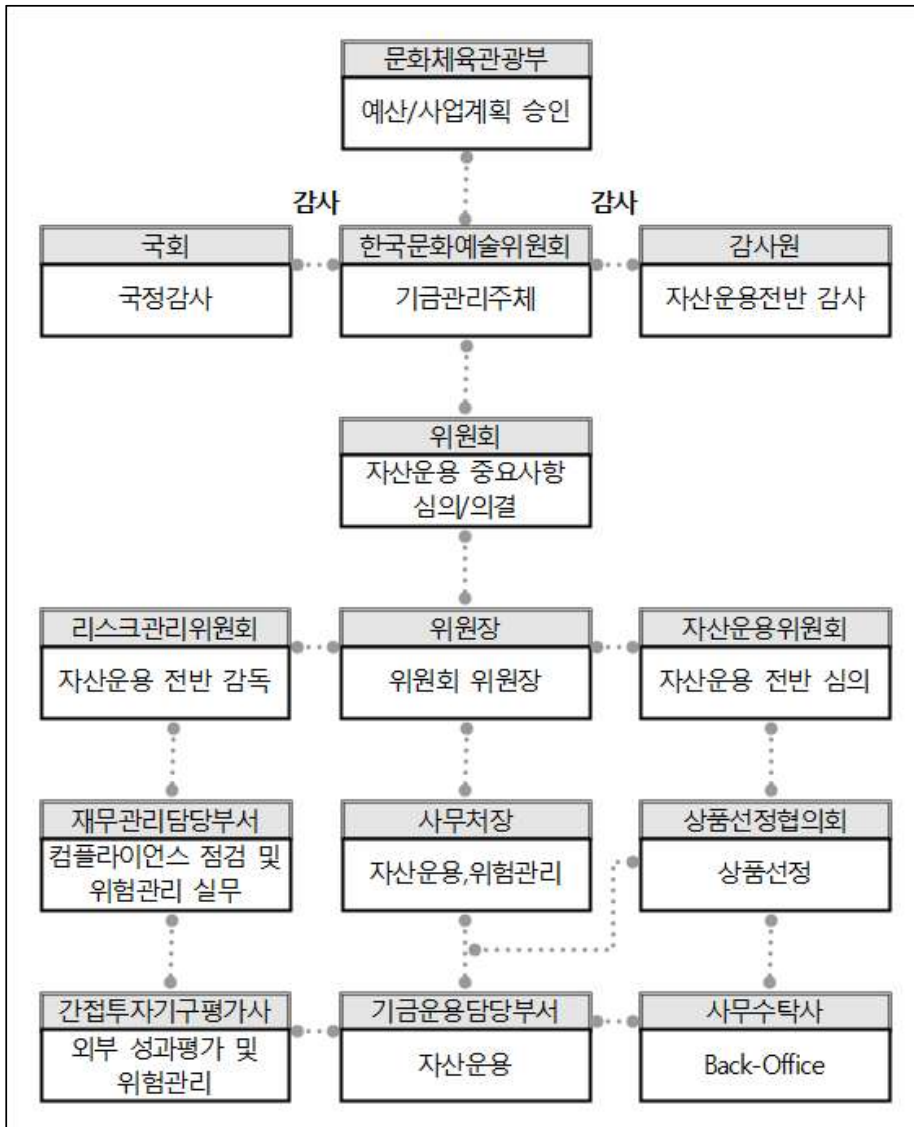
3. 자산운용 관련 규정

- 「국가재정법」 제79조에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기금운용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예술위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운용지침』,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문화예술진흥기금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지침』 등을 제정하여 자산운용과 관련된 모든 조직 및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다.

4. 자산운용 체계

□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예술위가 운용·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의 주무부서인 **◆◆◆◆**부서 내에 위치한 자산운용부서(기금운용 전문인력)가 기금운용 및 관리를 담당하며, [그림 1]과 같이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상품선정협의회 등을 설치·운영하고, [그림 2]와 같은 운용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림 1]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의 의사결정 체계



[그림 2]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 의사결정의 기본체계

구분	내용	비고
자산운용 관련 제규정	관계법령 - 「국가재정법」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규정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지침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지침
연간 기금 (자산)운용계획 수립	전략적 자산배분(안) 수립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설정 적정유동성 규모 산정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월간 자산운용계획 수립	월간 수입/지출 규모 파악 자산군별/상품별 투자규모 설정	운용실무협의회 자문
자산운용	전략적(전술적)자산배분 계획에 근거하여 자금운용	대체투자 및 해외투자시 자산운용위원회 사전 심의 상품선정협의회 운영
성과평가	일간/월간/연간 성과평가	외부 성과평가기관에 의뢰 성과평가 결과 환류

- 자산운용위원회는 자산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 관련 심의기구로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 지침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예술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표4]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명단 ('19년 ~ '21년)

성명	소속	직위	위촉기간	비고
(Blank area for member list)				

-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자산운용상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자산운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리스크관리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장리스크 관련 허용위험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 성과평가에 관한 검토 등 자산운용에 관한 위험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기구로 예술위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표5]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19년 ~ '21년)

성명	소속	직위	위촉기간	비고
(Blank table content)				

- 상품선정협의회는 시장상황 및 이슈, 내부 자금상황 등을 토대로 하여 실질적인 자금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부상품을 선정하는 의결기구로 재무관리담당 또는 기획담당 부서장 및 본부장 등 기금운용, 재무관리 분야 경력이 있는 내부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표6] 상품선정협의회 구성원 명단 (' 19년 ~ ' 21년)

성명	소속	직위	위촉기간	비고
(Blank table content)				

5. 자산운용 인력 현황

- 자산운용의 실무는 자산운용, 위험관리, 성과평가로 구성되는데 [표7]과 같이 **◆◆◆◆부** 소속 2인의 기금운용 전문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표7] **◆◆◆◆부** 기금운영 전문인력 업무분장표

성명	지위(직급)	업무분장	입사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적립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정) ○ 적립금 관리 및 운용(정) ○ 부실자산 관리 및 투자자금 회수 ○ 기금운용실적평가 지표 관리 및 보고서 작성 ○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협력 ○ 적립금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모니터링 ○ 기금 운용 관련 대내·외 업무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적립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부) ○ 적립금 관리 및 운용, 자금 출납(부) ○ 부실자산 관리 및 투자자금 회수 ○ 기금운용실적평가 지표 관리 및 보고서 작성 ○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협력 ○ 적립금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모니터링 ○ 기금 운용 관련 대내·외 업무 처리 	

- [표8]과 같이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유사유형·규모의 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기금운용 담당인력수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예술위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에게 기금운용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

[표8] 문화예술진흥기금 유사유형·규모 기금운영 담당인력 현황('20년 기금운용평가보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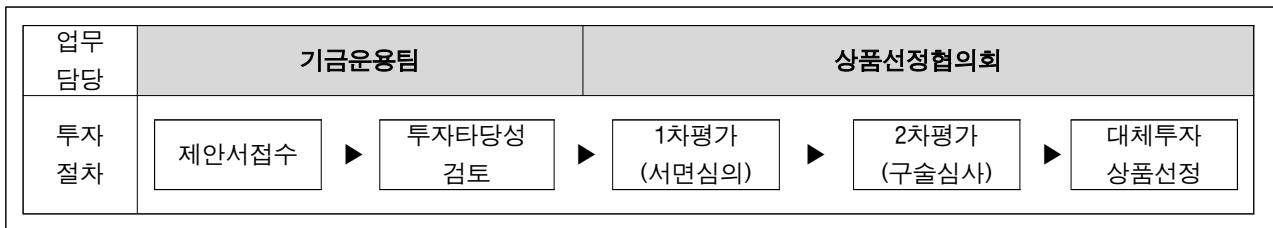
유형	규모	주무부처	기금명	관리기관	연중운용 평잔	연기금 투자폴 위탁운용 비중	기금 운용 담당 인력
사업성							
사업성							
사업성							
사업성							
사업성							
사업성							
사업성							

6. 대체투자 운용 분야

□ 대체투자 절차

- 예술위는 [그림3]과 같이 기금운용팀에서 위탁운용사로부터 상품 제안서를 접수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상품선정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투자를 결정한다.

[그림3] 대체투자 절차



□ 대체투자 현황

- 예술위는 [표9]와 같이 2021년 말 현재 전체 기금운용자산 약 〇〇〇억 원 중 대체투자자산에 약 〇〇〇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대체투자 비중은 '19년 〇〇%에서 '21년 〇〇%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예술위는 주식과 채권 위주의 전통적인 투자자산 운용 기조와 다르게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표9] 대체투자 현황 ('19년 ~ '21년)

(단위 : 억 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기금운용	계(①)			
단기	현금성·유동성 등			
중장기	주식·채권 등			
	대체 투자 금액(②)			
	비중(②/①x100)			

□ 대체투자 운용 결과

- 예술위는 지난 3년간, [표10]과 같이 전체 기금운용자산 운용수익률과 비교하였을 때, 대체투자에서 상대적으로 BM(목표수익율) 대비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표10]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수익률 ('19년 ~ '21년)

(단위: %, %p)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익률	BM 대비	수익률	BM 대비	수익률	BM 대비
기금운용		(Blank area with diagonal line)					
단기							
중장기	주식						
	채권						
	대체투자						

Ⅲ. 감사결과

1. 총평

- 기금운용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체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및 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최근 시장상황과 자산 관리 소홀 및 대체투자 부실운용 같은 타 기관 사례 등에 비추어 기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 이와 관련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 이에 감사실은 자산운용 및 관리실태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기금의 건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22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진행

- 자산운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 ○○○○부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19년 ~ '21년)의 자산 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 전반을 감사범위로 설정

- 감사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 됨
 - 자산운용 위험관리 조직·직제 부적정
 - 외부위탁 기관 및 상품선정 관련규정 관리 미흡
 - 운용실무협의회·상품선정협의회 운영 및 관련규정 관리 부적정
 - 상품선정협의회 결과보고 업무처리 부적정
 - 「자산운영위원회 운영기준」·「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기준」 제정 및 관리 부적정

- 위와 같은 행위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예술위의 인력·규모 등 기관의 역량과 맞지 않게 설계된 자산운용 의사결정 구조로 인하여, 실제업무와 규정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과중한 업무가 자산운용 부서에 부여되는 상황에 기인함
- 예술위 『자산운용지침』은 '10년 최초로 제정된 후, 현재까지 총 13회의 개정을 통해 「국가재정법」 등 상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였음
- 그런데, 이후 자산운용부서의 나누이전, 여러 차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별 업무분장, 그리고 미진했던 전문인력 확보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자산운용 의사결정 체계 운영의 현실적인 난제들이 발생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비·개선 없이 현재까지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음
- 그 결과,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자산운용관련 업무의 소관부서, 담당자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차이가 형성되고 이에 따른 업무수행 과정에서 규정 위반 행위가 무의식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소수의 기금운용 전담인력에게 과중된 업무의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설치·운영되고 있는 견제장치는 그 목적과 달리 효과가 미비하고 오히려 기금운용의 효율을 방해하는 등 또 다른 문제발생의 원인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부당행위 발생 원인이 실무자 및 업무관계자의 업무태만 등에 기인하였다고 보다는 관성화 된 난제에 대해 특별하게 문제의식이나 개선의지를 갖지 않고 현재까지 안일하게 업무처리를 하게 된 ‘조직의 학습된 무기력’에 있으므로, 이는 기금관리 및 기관경영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어 개선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감사과정에서 기금운용 전담인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자산운용 업무 개선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서의 자율적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자산운용 업무환경 개선
 - 은행방문업무 등에 따른 시간적 손실 개선을 위한 펌뱅킹 도입
 - 주요 문서, 자산 관리를 위한 보안시설(금고 등) 마련
 - 전문인력 고용체계 차별화
 - 기금운용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자산운용업무 개선

2. 점검결과 요약

- 자산운용 위험관리 조직·직제 부적정
 - 위험관리 전담조직 ‘재무관리담당부서’의 부존재
 - 자산운용부서로부터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미확보
- 외부위탁 기관 및 상품선정 관련규정 미흡
 - 자산운용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 및 상품선정

- 운용실무협의회 · 상품선정협의회 운영 및 관련규정 관리 부적정
 - 운용실무협의회 미운영
 - 상품선정협의회 운영의 임의적 간소화 및 효과성 저조

- 상품선정협의회 결과보고 업무처리 부적정
 -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는 형식적인 보고로 업무처리

- 「자산운영위원회 운영기준」 ·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기준」 제정 및 관리 부적정
 - 임의의 방식에 의한 규정제정 및 관리 부실

3. 감사결과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변상	징계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감액	기타						
5	-	-	-	-	-	-	-	-	-	2	1	2	-	-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번호	제 목(지적사항)	처분 종류	처분요구사항
1	자산운용 위험관리 조직·직제 부적정	권고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기관 내부에 구축하여 자산운용 전담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거나, 이를 대신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자산운용 위험관리가 실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
2	외부위탁 기관 및 상품선정 관련규정 미흡	개선	자산운용을 위한 금융기관 및 상품선정 등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제·개정
3	운용실무협의회·상품선정협의회 운영 및 관련규정 관리 부적정	개선	실제 기관의 역량과 대내·외적인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 업무절차에 맞도록 운용실무협의회, 상품선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 등을 현행화
4	상품선정협의회 결과보고 업무처리 부적정	통보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는 형식적 기안이 상신되는 행위는 기관행정의 신뢰성, 투명성을 저해하므로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임직원들의 자정노력 추진
5	「자산운영위원회 운영기준」 ·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기준」 제정 및 관리 부적정	통보 (시정완료)	각 위원회 운영기준을 현행화하여 예술위 『제규정 관리규정』에 따라 제정·관리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 해당사항 없음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 해당사항 없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권 고

제 목 자산운용 위험관리 조직·직제 부적정
소 관 부 서 ◆◆◆◆부, ○○○○부
조 치 부 서 ◆◆◆◆부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주체로서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에 따라 자산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향,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관계자들이 기금을 운용한다.

예술위는 「국가재정법」 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및 『자산운용지침』 제8조(자산운용의 조직과 역할) 및 제19조(위험관리 조직 및 보고체계)에 따라, 자산운용 전담부서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위험관리 실무조직으로서 ‘재무관리담당부서’에 위험관리 전담업무를 부여하고 자산운용상 발생가능한 위험관리 및 자산운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실질적인 감독 및 견제기능을 실시간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상 발생 가능한 위험관리 및 자산운용의 적정성 평가를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 역시 자산운용 전담부서와 독립적으로 ‘재무관리담당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예술위 『사무처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조(업무분장)는 『사무처운영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각 본부에 배속된 하부조직의 분장업무를 별표 제3호로 정하고 있는데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업무는 ○○○○부에 분장되어 있다.

2. 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① 위험관리 전담조직 ‘재무관리담당부서’의 부존재

「국가재정법」 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제2항에서 기금관리주체는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는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 평가지표 항목인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분리와 견제’는 ‘자산운용과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나 인력이 적절히 분리되어 상호 독립성을 가지거나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기금 자산운용지침 작성 가이드라인’에서는 “위험관리의 주요사항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주요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감시기능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으로 위험관리 전담조직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내부에서 구축하기 어려울 경우, 위험관리 사항을 외부 전문인력에 위탁하여 운용”이 가능한데, 이 때에는 “외부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자산운용지침을 통해 문서화 된 관리 감독 방안을 명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예술위는 '19.12.11 『자산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자금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 전담부서로부터 독립적인 실무조직으로서 ‘재무관리담당부서’ 를 설정하였으나, 자산운용 위험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추가 채용과 해당 업무의 우선순위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금운영 평가에서 요구하는 ‘자산운용 업무와 위험관리 업무의 조직상 분리와 독립적 운영’ 을 표면적으로나마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부에 분장이 되어 있을 뿐 자산운영 전반을 감독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자산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등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조직은 부재하다.

② 자산운용부서로부터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미확보

예술위는 '20.12.21 『자산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전담부서를 기존 ‘기획담당부서’ 로부터 ‘재무관리담당부서’ 로 조정하였는데, 『사무처운영규정 시행세칙』 에 “자산운용 업무는 ◆◆◆◆부, 리스크관리 업무는 ○○○○부로 분장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부에 ‘재무관리담당부서’ 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부의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실질적인 위험관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고려되어, 현재는 불가피하게 ◆◆◆◆부(자산운영부서)에서 ‘재무관리담당부서’ 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는 부서 업무분장에 ‘자산운용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지만, 실제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은 사실상 ◆◆◆◆부의 기금운용 담당자들이 수행하고 있어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자산운용부서와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3. 관련부서의 주장

○○○○부는 『사무처운영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3호 부서별 분장업무표에서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업무를 ○○○○부에 분장하고 있으나 “현재 ○○○○부에는 자산운용의 위험관리와 감독, 견제기능을 수행할 전문인력 배치나 업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물리적으로도 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부를 『자산운용지침』 제8조제5항 등의 ‘재무관리담당부서’로서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직제 개편과 전문인력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부서별 업무분장을 관장하는 ◆◆◆◆부는 현재 ○○○○부가 『자산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관리담당부서’로서 실질적인 위험관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향후 “단계적으로 위험관리 업무를 ○○○○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증원 노력, 내부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인력배치 등 개선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예술위 『자산운용지침』은 '10년 최초로 제정된 후, 현재까지 총 13회의 개정을 통해 「국가재정법」 등 상위규정 및 외부평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여러 차례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의 혼선, 그리고 미진했던 전문인력 확보 등 기관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자산운용 의사결정 체계 운영에 난제들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 해소하지 못하고 당면한 외부평가 대응 등을 위해 실제 운영방식과 다른 형식적인 미봉책을 유지해 왔다.

그 결과, 관련규정에 대한 임시방편적 해석·적용에 따라 자산운용관련 업무의 소관

부서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차이가 발생되고, 오랜시간 전문인력을 증원하지 못하는 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위험관리, 성과평가 등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자산운용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업무가 자산운용 담당자들에게 과중되고 있는 등 현실과 규정의 괴리가 상존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통제 제도로써 자산운용과 위험관리가 분리 운영되어 자산운용의 투명성, 안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실제 기관의 역량과 대내·외적인 환경 등을 검토하여 「국가재정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기관 내부에 구축하여 자산운용 전담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거나, 이를 대신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자산운용 위험관리가 실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개 선

제 목 외부위탁 기관 및 상품선정 관련규정 미흡
소 관 부 서 ◆◆◆◆부
조 치 부 서 ◆◆◆◆부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주체로서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에 따라 자산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향,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관계자들이 기금을 운용한다.

자산운용위원회는 자산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연간 총 4회 개최되고 있으며, 자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는 ◆◆◆◆부에서 담당한다.

2. 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예술위는 『자산운용지침』 제22조(외부위탁 기관 및 상품의 선정원칙)에 따라 기금 운용을 위한 금융기관 및 상품선정 시 선정기준과 근거를 자산유형별로 세분화한 『문화

예술진흥기금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지침(이하 ‘금융기관 선정지침’)』 제5조(집합투자업자의 선정절차)를 토대로 결정된 집합투자업자 명단을, 연1회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되는 ‘금융기관 선정 및 운용기준 검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고, 이에 근거하여 자산운용부서는 외부위탁기관 및 상품선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동 규정 제11조(기타사항)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기관 선정관련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용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예술위가 투자했던 금리DLS(파생결합증권) 상품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20년 만기시 손실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부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원금회복 방안을 수립하여 예술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상품선정협의회 의결을 통해 ‘■■■생명’에 260억 상당의 새로운 펀드(유가증권 신탁)를 개설하고 기존의 정상자산과 함께 손실자산을 '20.7.3 이관하였다.

그러나 당시 ‘■■■생명’은 ‘금융기관 선정 및 운용기준 검토’를 통해 자산운용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20년 거래대상 집합투자업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상품선정을 위해서는 예술위 『금융기관 선정지침』 제11조(기타사항)에 따라 자산운용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고 임의의 의사결정을 통해 업무가 추진되었다.

3. 관련부서의 주장

◆◆◆◆부 기금운영 전담인력은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지침의 목적은 투자기관의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함”이며, “■■■생명은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승인받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시 결정된 금융기관 선정기준에 상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부 결재를 받아 투자를 결정했고, 기존자산을 신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규투자라고 보지 않아 자산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내부의결에 대한 근거를 남겨야 할 것 같아 상품선정협의회의 의결을 받았고, 또한 자산운용위원회에도 사후 보고하였다.” 고 답했다.

◆◆◆◆부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은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보험사 모두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산운용사는 몇몇 운용사를 제외하고는 규모가 매우 작아 대부분 신용등급이 없고, 자본금 100억원 미만이며, 직원수도 50명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생명의 경우 국내 굴지의 생명보험회사로서 자산규모 31.2조원, 자기자본 2.0조원(2021년말 기준)의 신용등급 ‘AA-’의 우량한 금융기관이며, 당시 집합투자업자 선정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운용은 ☐☐생명의 계열사로 ☐☐생명에 비해 자기자본 472억원(2021년말 기준)의 신용등급도 없는 규모가 작은 회사인데, ☐☐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 선정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생명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리스크를 통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선정지침』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 한다 답변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선정 및 운용기준을 심의하는 주체인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사전 보고 및 질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내부 결재과정을 거친 결정사항” 인 점을 강조하였다.

4. 판단

기금운영 전담인력의 “신규투자라고 보지 않았다” 는 주장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선정지침』의 목적은 기금을 위탁운용하는 금융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으므로 ☐☐생명에 위탁 된 투자상품의 기존·신규 여부는 자산운용위원회 보고 건으로 생략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자산운영부서(◆◆◆◆부)가 자산운용을 위한 금융기관 및 상품선정 등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기금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지침』 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제·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상)개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개 선

제 목	운용실무협의회·상품선정협의회 운영 및 관련규정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부
조 치 부 서	◆◆◆◆부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주체로서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에 따라 자산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향,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관계자들이 기금을 운용한다.

자산운용 업무는 기금운용의 주무부서인 ◆◆◆◆부서 내에 편제되어 있으며, 자산운용 전담인력 2인으로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한다.

2. 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① 운용실무협의회 미운영

예술위는 『자산운용지침』 제8조(자산운용의 조직과 역할)에 따라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고 시장상황을 여러 각도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협의체 기구로서 판매사, 운용사, 평가사 각 1인 및 기금운용 담당자 2인으로 구성 된 ‘운용실무협의회’ 를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운용실무협의회는 지난 3년간 규정과 같이 운영 된 사실이 없는데, 이는 자산운용 업무를 나주에서 수행하고 있어 서울 여의도 중심으로 활동하는 판매사, 운용사, 평가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회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이를 대신하여 기금운용 담당자들이 세미나 참석 또는 기관 및 담당자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선 상으로 전문지식 및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습득하고 있는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실무협의회 운영의 실효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② 상품선정협의회 운영의 임의적 간소화 및 효과성 저조

예술위는 『자산운용지침』 제8조(자산운용의 조직과 역할)에 따라 위험이 내재된 투자 상품의 투자의사 결정시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상품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품 선정협의회’ 를 운영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차 제안서 최종심의, 2차 구술 심사 시행 후 상품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품선정협의회 구성원은 통상 기금운용, 재무경험이 있는 본부장 중 3인을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그런데 상품선정협의회 구성원인 본부장 3인이 출장 등으로 한 날, 한 시 회의 참석이 어렵고, 구술심사 진행을 위해 서울에 있는 투자상품 관계자를 나주로 방문시키는데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등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기에는 시의적, 물리적 한계가 발생 되며, 또한 투자상품의 특성상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는 통상 투자상품 제안서를 자산운용 전담인력이 검토 후 이에 대한 의견을 본부장 3인에게 전화 등을 통해 보고한 뒤 구술심사를 생략하고 상품선정 의결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에서 '상품선정협의회 구성원의 자산 운용 전문성 결여로 상품선정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불명확' 이라 평가받았으며, '상품 선정협의회는 전담인력이 제시한 투자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이 높지 않음' 이라 지적된 바 있다.

3. 관련부서의 주장

◆◆◆◆부는 운용실무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운용 전담인력들이 빚가람기금 운용협의회 참석, 타 기금 및 금융기관 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습득, 연기금 투자풀 및 외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운용실무협의회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재 예술위의 기금 운용규모, 운용인력의 인원 수, 그리고 나주혁신 도시로의 이전 등을 고려하면, 『자산운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판매사, 운용사, 평가사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 운영은 한계가 있다” 고 설명하면서 “운용실무협의회는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기 위한 전문성 보완 장치로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운영취지와 방식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상품선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현재 운용 중인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은 채권, ELS 등으로 규정과 같이 구두심사 등을 진행하기에는 평이한 상품이며, 복잡한 대체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판매담당 매니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자산 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시 조치하고 있다.” 고 설명하면서 “상품선정위원회는 기금운용 인력이 부족한 예술위의 현실을 고려하여 기금운용 전담인력의 의사결정을 보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한 자구책이었으나 현재 상품선정협의회 구성원들의 잦은 출장과 상품에 대한 검토시간 부족, 그리고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상품

선정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타 기금의 운영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안을 모색”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예술위 『자산운용지침』은 '10년 12월 최초 제정되었는데, 당시 운용실무협의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고 시장상황을 여러 각도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협의체 기구로써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판매사, 운용사, 평가사 각 1인 및 기금운용역 2인으로 구성’ 한다는 현재의 내용이 규정에 포함 된 이후 개정된 바 없으며, 상품선정협의회는 ‘기금의 내부인력 3인으로 구성하여 1차 제안서 심의, 2차 구술심사 시행 후 상품을 선정’ 하는 현재 규정과 같은 운영방법이 '13년 1월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명문화 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위의 『자산운용지침』을 제외하면 운용실무협의회, 상품선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강제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규정이 없고, 「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 지침의 제정 등)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기금 자산운용지침 작성 가이드라인’ 에서, 기금의 자산운용은 각 기금관리주체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 하에 이뤄지고 기금별로 자산운용 여건이 다르므로, 자산운용지침의 세부내용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예술위의 운용실무협의회, 상품선정협의회는 예술위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 설치·운영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규정에 따른 운용실무협의회, 상품선정협의회의 운영이 대내외적인 환경에 따라 현실적인 난제들이 발생하고 그 목적과 달리 효과성이 미비하며 기금운용 업무의 효율을 방해하는 등 실제업무와의 괴리가 있음을 ◆◆◆◆부에서 인지하여 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부는 소관부서로서

자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 및 의사결정 체계 등 준비를 선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임의의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실제 기관의 역량과 대내·외적인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 업무절차에 맞도록 운용실무협의회, 상품선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 등을 현행화하여 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자산운용부서(◆◆◆◆부)가 적절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자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상)개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상품선정협의회 결과보고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부
조 치 부 서 ◆◆◆◆부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에 근거하여 자산운용 의사결정 체계를 구성하여 기금운용을 하는데, 시장상황 및 이슈, 내부 자금상황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자금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험이 내재된 투자 상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의결을 받아 상품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품선정협의회를 운영한다.

◆◆◆◆부는 기금운용 관련 투자상품을 결정 시 사전에 상품선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구성원의 결의를 확인한 의결서를 근거로 자금을 집행하는데, 이 때 상품선정협의회 개최결과를 자산운용 관련부서 소속 부서장·본부장을 거쳐 사무처장 보고 후 결재를 받은 기안을 지출원인행위로 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2. 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예술위 임직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공단체의 소속원으로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윤리경영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할 수 있도록 『윤리지침』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에 따라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 하여야 하며, 개인·부서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면 안 된다.

상품선정협의회는 통상 예술위의 본부장 3인으로 구성되는데, ◆◆◆◆부 진술에 따르면 본부장의 업무특성상 외부출장이 잦은 관계로 사전에 일정을 조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상품선정협의회가 개최 불가능한 상황이 연간 20~50%의 확률로 발생되었다고 한다.

상품선정은 시의성이 매우 중요한 업무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하는데 기존의 상품선정협의회 일정이 조정되면 상품투자 시기를 놓치게 됨으로, 이 경우 ◆◆◆◆부는 별도 집합회의 없이 각 본부장들에게 전담인력이 전화 등을 이용하여 설명·보고하고 사후 의결서를 받아 처리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런데 '19년부터 '21년까지 상신한 모든 상품선정협의회 결과보고 기안에는 한 날, 한 시, 지정된 장소에 모여 상품선정을 의결한 것으로 예외 없이 보고되었다.

이에 결과보고 기안을 살펴본 결과, 상품선정위원회는 '19년 64회, '20년 55회, '21년 50회로 3년 간 총 169회차가 개최되었는데 아래 [표]와 같이 상품선정협의회 구성원 과반이상 부재일(출장, 휴가 등) 개최 37건, 결과보고 시 의결서 누락 21건, 불참 구성원 참석 보고 7건으로 총 65건의 결과보고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었다.

[표] 상품선정협의회 부적정 결과보고 사례 일람('19년 ~ '21년)

연도	개최일시		장소	연번	구성원 과반이상 부재일 개최	결과보고 의결서 누락	불참 구성원 참석보고	비고
' 19	01.16.(수)	10:00	본관 세미나실2	1차	○			
	03.14.(목)	10:00	본관 세미나실2	10차	○			
	03.25.(월)	10:00	본관 세미나실2	11차	○			
				12차	○			
				13차	○			
				14차	○			
				15차	○			
	04.08.(월)	16:00	본관 세미나실2	17차	○			
	05.14.(화)	16:00	본관 세미나실2	22차	○			
				23차	○			
	05.22.(수)	16:00	본관 세미나실2	26차	○			
	05.29.(수)	10:00	본관 세미나실2	27차	○			
				28차	○			
	06.27.(목)	16:00	본관 세미나실2	32차	○			
07.04.(목)	13:30	본관 세미나실2	33차	○				
07.10.(수)	11:00	본관 세미나실2	34차	○				
07.16.(화)	15:00	본관 세미나실2	36차		○			
07.23.(화)	10:30	본관 세미나실2	38차	○				
09.09.(월)	10:00	본관 세미나실3	45차	○				
' 20	01.20.(월)	10:00	본관 세미나실3	6차	○			
	01.17.(금)	10:00	본관 세미나실3	7차	○			
				8차	○			
	07.02.(목)	10:00	본관 세미나실3	34차	○			
08.26.(수)	16:00	본관 세미나실3	42차	○				
			43차	○				
' 21	02.23.(화)	16:00	본관 세미나실3	5차			○	
				6차			○	
				7차			○	
	03.16.(화)	16:00	본관 세미나실3	8차				○
				9차			○	
				10차			○	
	03.22.(월)	16:00	본관 세미나실3	11차	○	○		
	03.25.(목)	16:00	본관 세미나실3	12차	○			
	04.12.(월)	16:00	본관 세미나실3	13차		○		
				14차		○		
	06.07.(월)	16:00	본관 세미나실3	23차			○	
	06.23.(수)	16:00	본관 세미나실3	24차		○		
	06.29.(화)	16:00	본관 세미나실3	25차	○	○		
				26차	○	○		
				27차	○	○		
				28차	○	○		
	07.19.(월)	16:00	본관 세미나실3	29차		○		
	08.09.(월)	16:00	본관 세미나실3	34차	○	○		
35차				○	○			
11.29.(월)	16:00	본관 세미나실3	42차	○	○			
			43차	○	○			
			44차	○	○			
12.20.(월)	16:00	본관 세미나실3	45차		○			
			46차		○			
			47차		○			
12.22.(수)	16:00	본관 세미나실3	48차	○	○			
			49차	○	○			
12.28.(화)	16:00	본관 세미나실3	50차		○			
합계					37건	21건	7건	

3. 관련부서의 주장

◆◆◆◆부는 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업무효율을 고려한 구성원들의 양해로 형식적 기안이 상신” 되었다고 해명하면서, “상품선정협의회 구성원인 본부장 3인의 잦은 출장 등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 상품에 대한 전문성 미흡의 문제 등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하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상품선정협의회 회의결과 보고를 관행화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일부행위는 기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불가피한 업무로 당초일자 개최가 어려웠다는 사정, 그러한 경우 ◆◆◆◆부는 전화 등으로 각 본부장에게 상품결정의 동의를 미리 구한 뒤 결과보고를 상신하고 이후 누락 된 의결서 등은 사후결재를 받아 최종적으로 수집해 둔 업무처리 정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상품선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 내용의 형태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활동이 확인되므로 책임을 물을 수준에 이르지 않는 아니하여 불문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는 형식적 기안이 상신되는 행위는 기관행정의 신뢰성, 투명성을 저해하므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임직원들의 자정노력 추진을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통 보(시정완료)

제 목 「자산운영위원회 운영기준」·「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기준」 제정 및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부
조 치 부 서 ◆◆◆◆부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주체로서 「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산운용 의사결정 체계로 자산운영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규정 관리규정』으로 제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등 관리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정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있다.

2. 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예술위는 『자산운용지침』 제8조(자산운용의 조직과 역할)에 따라 자산운용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위원의 선임기준, 회의소집 및 통지, 수당의 지급 등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운영기준을 별도로 두어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부로부터 제출받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기준」 제9조(간사 및 사무

지원)을 살펴보면, 리스크관리위원회 사무지원을 ■■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술위 『자산운용지침』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재무관리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규정과 맞지 않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기준」은 '10.10.25 제정되어 '16.10.28 최종 개정 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최초 ■■부에서 담당하다가 2011년도 경영평가에서 ‘리스크관리 기능을 운용부서에서 분리하되 ■■부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관장할 것을 권고’ 한 지적사항에 수행부서가 변경 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운영기준 제정 후 발생한 개정사항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위 두 개의 운영기준은 예술위 규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자산운영 실무자료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자산운용지침』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운용지침』에 ‘각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앞서와 같이 각 운영기준이 실제와 다른 내용이거나 세부사항이 운영기준에 있더라도 규정화 되어 있지 않아 특별히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등 관리·적용에 한계가 있다.

3. 관련부서의 주장 및 판단

◆◆◆◆부는 과거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는 ○○○○○○센터에서 ◆◆◆◆부로, 리스크관리 업무는 ■■부에서 ○○○○부 등으로 이관되었지만, 당시 「자산운용위원회 운영기준」,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기준」이 현행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설명하고, '22.4.28. 제147차 규정심의위원회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운영지침」, 「문화예술진흥기금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치가 완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자산운영위원회 운영기준」·「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기준」을 현행화하고 예술위 『제규정관리규정』에 따라 제정·관리하도록 조치한 감사 지적내용에 대하여 ◆◆◆◆부가 시정 완료하였으나,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임직원들의 자정 노력 추진을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시정완료)]